

[서식 예] 위자료 등 청구의 소(사실혼 파기)

소 장

원 고 ○ ○ ○(○ ○ ○) (주민등록번호)

19 이 이 이 이 아 생

등록기준지: ○○시 ○○군 ○○읍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피 $\Delta \Delta \Delta (\Delta \Delta \Delta)$ (주민등록번호)

1900. 0. 0.생

등록기준지: ○○시 ○○군 ○○면 ○○길 ○○

주소: ○○시 ○○구 ○○길 ○○(우편번호)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 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 1. 원고는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몸으로 생활하다가 19〇〇. ○.경 역시 배우자와 사별하고 홀로 ○남 ○녀를 양육하며 살아가던 피고를 만나 위 시기부터 동거하 며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 2. 원고는 부동산 중개일을 하였고, 피고는 식육점을 경영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원고는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고의 말을 들어주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19○○. ○. ○. ○○시 ○구 ○○길 ○○ 소재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후 같은 해 ○. ○.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위 주택은 피고의 전혼의 자인 소외 □□□에게 맡겨 두고 원고와 피고는 ○○시 ○구 ○○길 ○○에서 함께 거주하며 식육점을 경영하였고, 원고는 아파트 경비일까지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19○○. ○.경 원고와 피고는 식육점을 정리하고 위 ○○시 ○구 ○○길 ○○로 주거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피고는 원고의 월급을 모두 챙기면서 원고에게는 용돈도 전혀 주지 않아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19〇〇. 〇.경 원고가 피고에게 용돈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자 피고는 바로 그날부터 동인의 딸 방으로 옮겨 각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피고와 위 □□□는 추운 겨울에 원고의 방으로 들어오는 전기를 절단해 버려 원고로 하여금 추위에 떨게 하고 심지어 원고의 방문을 잠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다가, 위 □□□는 19 ○○. ○.경 원고에게 '마귀와는 한 집에서 같이 살 수 없다'고 폭언을 하며 원고를 집에서 내쫓았고 피고도 위 □□□에게 동조하면서 원고와의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에서 부당하게 축출당한 후 노숙자로 생활하다가 최근에야 ○○시 ○○구 ○○동 ○○ 소재 방 한 칸에 월세로 입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3. 원고는 피고와 소외 □□□□로부터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 당하여 17년 동 안이나 함께 살아온 세월이 안타깝고 억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위자료로 금 ○○○원 및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 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2

1. 갑 제2호증

1. 갑 제3호증의 1,2

1. 갑 제4호증

원고, 피고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원고, 피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인진술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 소장부본

1. 납부서

각 1통

1통

1통

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

원 고 ○ ○ ○ (인)

○ ○ 가 정 법 원 귀 중



제출법원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제척기간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소장원본 및 부본 각 1부	관련법규	가사소송법 제13조, 민법 제843, 806조
불복절차 및 기간	・항소(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비 용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		

※(1) 제 척 기 간

-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
-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함.